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량 확대에 따른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수산물의 방사능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⑱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⑲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1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4”를 각각 “309”로 하고, 해양수산연구소 또는 환경연구소 “32”를 “37”로 한다.

별표 1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4”를 각각 “309”로 하고, 해양수산

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32”를 “37”로 한다.

별표 31 제12호 다음에 제13호부터 제16호를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6조 관련)

13. 제46조제1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1월 2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14. 제46조제1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1월 20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3
15. 제46조제1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1월 2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2
16. 제46조제1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1월 2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한시정원) ① ~ ⑮ (생략) <u><신 설></u>	제46조(한시정원) ① ~ ⑮ (현행과 같음) <u>⑯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u>
<u><신 설></u>	<u>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에 둔다.</u>
<u><신 설></u>	<u>⑱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u>
<u><신 설></u>	<u>⑲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u>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2
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
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
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304</u>		<u>309</u>	+5	
일반직	계		<u>304</u>		<u>309</u>	+5	
	.		.		.		
	.		.		.		
해양수산연구소		또는	<u>32</u>		<u>37</u>	+5	
환경연구소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304</u>	• <u>309</u>	+5
일반직 계	<u>304</u>	<u>309</u>	+5
•	•	•	
•	•	•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32</u>	<u>37</u>	+5
•	•	•	